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개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과정 및 신청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조합원 사께서는 우리조합 경영지원실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개요

-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우선기업대상의 경우 온라인과정 등에서 100% 환급과정 포함)
- 재원은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2. 실시주체 및 대상

- 실시주체 :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실시대상 :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3. 지원내용

훈련종류	지원내용
집체훈련	• 자체훈련 훈련비 : 직종별 기준단가(사업주 규정)×훈련시간× 조정계수×훈련인원× 지원비율
	• 훈련수당 : 구직자,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20만원 한도 지원
	•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1,040원까지 지원(1개월 한도 : 276,000원)
	• 임금의 일부 :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한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 지원
현장훈련	• 집체훈련과 동일(단, 임금의 일부는 지원되지 않음)
원격훈련	• 훈련기관평가등급/훈련과정심사등급/훈련시간/지원비율 등에 따라 지원

※ 지원한도 :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300명 이하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

4. 지원요건

- 집체 · 현장 훈련
 - 전체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및 해당 훈련과정의 이수
- 인터넷원격 · 우편원격 훈련
 - 평가성적 60점 이상, 학습진도율(참여율) 80% 이상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별도 수료요건을 충족할 것
 - ※ 일과 학습의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솔루션이자 업무관련성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제공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 환급 과정 포함)
 - ※ 교육프로그램 과정 및 신청방법 등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이나 조합 경영지원실로 문의(02.6240.1014~9)

5.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훈련수료 후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 지사에 신청
- 제출서류 :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



6. 소멸시효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시효는 3년
- 소멸시효는 권리발생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은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신청하여야 하기에 권리발생일은 훈련종료일임

7. 관련사이트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의 기업(사업주) 지원 과정을 통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부분 등 관련 내용 파악 가능 

【 업무 진행절차 전반 】

업무단계	수행사항
과정인정신청	신청기한 - 위탁훈련 : 훈련개시 7일전까지 - 자체훈련 : 훈련개시 6일전까지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실시	신청기한 - 훈련개시 전일까지 확정자 명단 변경 - 훈련일수 2일 이하 : 훈련개시 전까지 - 훈련일수 3일 이상 10일 미만 : 훈련개시일까지 - 훈련일수 10일 이상 30일 미만 : 훈련개시 후 2일 이내 - 훈련일수 30일 이상 180일 이하 : 훈련개시 후 7일 이내 - 훈련일수일 이상 180일 초과 : 훈련개시 후 14일 이내
훈련수료 보고	신청기한 -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비용지원 신청	신청기한 -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